증평군 Jeung Pyeong

군 보

www.jp.go.kr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683호 2022년 4월 29일(금)

조 례

○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 ---------- 7
○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18

입법예고

○ 증평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 19

규 칙

○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2

예 규

○ 증평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 30

회람									

발행 : 증평군 편집 : 문화체육과 (☎835-4134, 우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34호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35호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9항에 위반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며,”를 “두며, 간사와”로, “담당자가”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위원회의 의결로”를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농어업용 저온저장고(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분 :”을 각각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6조제2항 단서”를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4항”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건축물에 대하여”를 “건축물이”로, “제1항”을 “법 제1항”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36호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37호

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증평군 농수산업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충청북도에서 생산·가공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주민에게 먹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증평군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약계층, 영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 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증평군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수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 먹거리 관련 업무 부서의 장

2. 지역 먹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인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각 공동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먹거리 관련 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 사항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심의 및 결정

2.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장과 부분과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군수는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장 1명과 부분과장 1명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장, 부분과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분과장이 된다.

제15조(증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복지·안전·환경 등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증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4.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주민의 식생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물류, 전처리, 가공시설 등
2. 지역먹거리 판매 시설
3.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을 위한 시설
4. 지역먹거리 관련 시험·연구·인증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업·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위탁)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와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군,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확대를 위하여 먹거리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로컬푸드 인증제) 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가공업자의 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평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기준, 신청 절차, 인증 및 인증 취소 등 인증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38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76명”을 “47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2명”을 “1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계	**477**					
정무직 계	**1**					
군수	1	1				
일반직 계	**456**					
4급	3	3				
4급~5급	1	1				
5급	21	13	2	1	3	2
6급 이하 소계	**431**					
별정직 계	**-**					
6급상당 이하	-					
연구직 계	**6**					
연구관	-					
연구사	6	5		1		
지도직 계	**14**					
지도관	1			1		
지도사	13			13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39호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 설치·운영을 하려”를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로 한다.

제7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액 감면율”을 “세액감면율”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40호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 (TOC)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41호

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고시 제2022-431호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2. 5. 19.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증평군 소속 공직자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안 제2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및 조치(안 제3조~제4조)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과 신고 및 조치(안 제5조~제6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안 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안 제8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안 제9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안 제10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안 제11조)

○ 신고·신청 등의 기록관리,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안 제12조~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증평군수(예산감사관,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2022년 5월 10일까지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예산감사관(전화: 835-3124, 팩스 : 835-3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예규명: 증평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예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규칙 제416호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인신청사항란의 'CODmn'를 'TOC'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승인내용란의 'CODmn'를 'TOC'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6조관련)

1. 산출공식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 $BS_1 + BS_2 + BS_3$

가. BS1: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필요한 월간비용

$$BS_1 = M_1 \times \left\{ 0.5 \frac{BLi}{\sum_{i=1}^{n} BLi} + 0.5 \frac{F(Li)}{\sum_{i=1}^{n} F(Li)} \right\}$$

1) M1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투자적립금 + 관거유지관리비

가) 운영관리비: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시설투자적립금: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투자적립금 (E) = Ei × Fi

(1) Ei: 시설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공사금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률

처리시설	공사금액(천원)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률	기준일
증평일반산업단지 (1단계, 2,500㎥/일)	9,244,000	2/1,000	2009. 2. 4.
증평일반산업단지 (2단계, 3,000㎥/일)	21,869,000	2/1,000	2016. 5. 1.
도안농공단지 (1단계, 200㎥/일)	4,330,000	2/1,000	2018. 8. 14.
도안농공단지 (2단계, 100㎥/일)	448,724	2/1,000	2021. 6. 3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률을 1/1000으로 한다.

다) 관거유지관리비: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관거유지관리비는 현재 부과가 되고 있지 않은 달성산단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며, 별도의 산출공식을 따른다.

2) BLi

가) 폐수

- 비용부담대상자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비용부담계획서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부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기관은 배출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오・하수

-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한다. 다만, 오염도 및 유량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할 수 있다

3) F(Li):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써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F(Li) = a \cdot Qi \times \left(\frac{b \cdot BODi + c \cdot TOCi}{2} + d \cdot SSi + e \cdot T-N + f \cdot T-P\right)$$

가)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나) BODi, TOCi, SSi, T-Ni, T-Pi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TOC, SS, T-N, T-P 농도. 다만, TOC농도가 BOD 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 식을 적용한다.

$$F(Li) = a \cdot Qi \times (c \cdot TOCi + d \cdot SSi + e \cdot T-N + f \cdot T-P)$$

다) a, b, c, d, e, f: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유량 계수

유량[㎥/일]	a	비 고
Qi ≤ 500	1.0	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가능
500 〈 Qi ≤ 1,000	1.1	
1,000 〈 Qi	1.2	

(2) BOD 계수

BOD값[㎎/L]	b	비 고
BOD ≤ 200	1.0	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가능
200 < BOD ≤ 300	1.2	
300 < BOD ≤ 400	1.4	
400 < BOD ≤ 500	1.6	
500 < BOD	2.0	

(3) TOC 계수

TOC값[㎎/L)	c	비 고
TOC ≤ 150	1.0	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가능
150 < TOC ≤ 200	1.3	
200 < TOC ≤ 300	1.6	
300 < TOC ≤ 400	2.0	
400 < TOC ≤ 500	2.5	
500 < TOC	3.0	

(4) SS 계수

SS값 (㎎/L)	d	비 고
SS ≤ 150	1.0	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가능
150 < SS ≤ 250	1.2	
250 < SS ≤ 350	1.4	
350 < SS ≤ 450	1.6	
450 < SS	2.0	

(5) T-N 계수

T-N 값 (㎎/L)	e	비 고
T-N ≤ 40	1.0	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가능
40 < T-N ≤ 80	1.2	
80 < T-N ≤ 120	1.4	
120 < T-N	1.6	

(6) T-P 계수

T-P (㎎/L)	f	비 고
T-P ≤ 10	1.0	
10 < T-P ≤ 20	1.2	비용원인부담자와
20 < T-P ≤ 30	1.4	협의 후 변경가능
30 < T-P	1.6	

나. BS2: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처리에 필요한 월간비용으로서 산출기준은 비용부담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BS3: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월간비용으로서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BS_3 = M_3 \times \left\{ 0.5 \frac{BLi}{\sum_{i=1}^{n} BLi} + 0.5 \frac{F(Li)}{\sum_{i=1}^{n} F(Li)} \right\}$$

1) M3: 월간 관거 유지관리비

2) BLi, FLi: 월간 비용부담금 산출 공식과 동일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1) 폐수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

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TOC	85 mg/ℓ	(기숙사는 170 mg/ℓ)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T-N	8 mg/ℓ	(기숙사는 16 mg/ℓ)
T-P	1 mg/ℓ	(기숙사는 2 mg/ℓ)

증평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발령한다.

2022년 4월 22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예규 제27호

증평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증평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침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며”를 “하며,”로, “기록 유지”를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리 또는 복구”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수리 또는 복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저장매체 \ 저장자료	공개자료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플로피디스크	㉮	㉮	㉮
광디스크 (CD·DVD 등)	㉮	㉮	㉮
자기 테이프	㉮·㉯중 택일	㉮	㉮
반도체메모리 (EEPROM 등)	㉮·㉰중 택일	㉮	㉮
	완전포맷이 되지 않는 저장매체는 ㉮ 방법 사용		
하드디스크	㉱	㉮·㉯·㉰중 택일	㉮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 비밀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광디스크 파쇄 시에는 파쇄조각의 크기가 0.25mm 이하가 되도록 조치

㉯: 전용 소자(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 소자장비는 반드시 저장매체의 자기력(磁氣力)보다 큰 자기력(磁氣力) 보유

㉰: 완전포맷 3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0'·'1'로 각각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 완전포맷 1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로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